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2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한병도·김승원·이형석

오영환 · 이상헌 · 권칠승

정일영ㆍ허 영ㆍ황 희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에도 교육·연구·진료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국립대학교법인과 달리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보는 조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아울러 COVID-19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립대학병원법인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중에 있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어린이병원이나 희귀질환 예방 및 치료센터·응급외상센터·모자 보건센터·국가격리병동 운영 등 국가 의료발전과 의료공공성 수행을 위해 비용을부담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세제 지

원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 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의 제목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전환 국립대학법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학교부속병원이었다가 전환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진료 활동에 지장이없는 범위 외의 수익 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 등의 세의무에 대한 특례) (생 략)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학교 부속병원이었다가 전환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 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 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 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 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 대학치과병원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별 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 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근 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 연구·진료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 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